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26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8.
3. 회부연월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⑨ (생략) <u><신설></u>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⑨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면제)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유지 기간, 부부 합산 소득, 대출 잔액 및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u>

나. 현행법상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제도 및 이자면제제도

-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18조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법 제18조제7항¹⁾은 대학생, 폐업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6조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한편, 동법 제16조의2제2항은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의2제4항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다. 검토의견

-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혼인건수는 약 19만 4천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1만건이 감소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0명으로 1명이하로 나타나는 등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2015 ~ 2023년 혼인건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건,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혼인건수	303	282	265	258	239	216	193	192	194
출생아수	438	406	357	326	302	272	260	249	230
합계출산율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80	0.720

자료: e-나라지표

또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2022년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결혼자금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4%, 22%로 가장 높았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여 각각 38%, 25%로 나타남.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통계청 조사 현황>

(단위: %)

	2022년		2024년	
	미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자금에 부족해서	35.4	22.0	38.0	25.0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13.4	7.7	12.4	8.1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4.7	9.1	6.1	10.8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9.3	12.5	11.0	14.4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3	11.9	8.8	8.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1.1	0.6	3.4	1.8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8.4	11.2	7.8	10.1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0.6	1.6	0.5	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2	23.3	11.4	19.1
기타	0.6	0.2	0.5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혼인을 제고에 기여하며, 다자녀 부모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최근 지속적인 혼인을 하락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으로 미래 노동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조한 혼 인율과 출산율이 미혼인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 에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실제 부담 경감의 효과, 법률의 명확성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의 경우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동법 제16조제2항²⁾은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해당 규정으로 학자금대출 채무가 면제되고 있는 대상은 2024년에 452명이며, 채무면제 금액은 35억 8,900만원으로 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25만명이며, 대출 규모 약 8,762억인 것에 비해 각각 0.001%, 0.004%로 작은 규모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급	금액	8,215	7,953	8,264	7,918	8,762
	인원	240,619	227,563	236,823	210,057	252,132

자료: 교육부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현황 통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사망		심신장애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1년	253	2,029	39	307	292	2,336
2022년	340	2,571	76	591	416	3,162
2023년	338	2,457	69	440	407	2,897
2024년	368	2,870	84	719	452	3,589

자료:교육부

※ 채무면제 승인시점 면제액 기준(비면제채무액 제외)

그런데, 개정안에 의한 적용대상은 현재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현황을 보면 2021년 대비 2025년 손실보전금이 약 5배 가량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환 의무의 면제로 인한 효과를 보다 엄격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금³⁾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2024년 5월말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자금대출	금액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손실보전금	인원	855	1,550	2,218	4,778	5,080

자료:한국장학재단

3) 사망,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원금 채권 손실 확정(상각)금에 대한 손실 보전

□ 둘째, ‘상환 의무 유예의 경우’는 상환 의무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로 채무자의 총 상환액은 증가하게 되므로, 당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경제적 완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환 유예 시에는 동법 제16조의2제4항4)도 함께 개정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아울러, 법률 체계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 대상을 예측함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8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본질적인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상환 유예 또는 면제대상에 대하여 유예와 면제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관계 기관 의견 제시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또는 면제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며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④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대출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